

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부두 사용 애로 해결



종 전



전용부두(타기업 소유)

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부두
(부두까지 1.2km 직선-1일 소요)

공용부두

항만법상 사용해야 하는 부두
(부두까지 2.7km 굴곡, 가스관 매립-3일 소요)

기업은 규제때문에 **가스관 폭발위험**을 감수하고
불필요한 비용 지불하며 공용부두로 크레인 이동

» 기업이 크레인 등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
인근 타 기업 소유의 전용부두 사용을 희망하나,
항만법상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하여 불편
하고 위험한 경로를 거쳐 공용 부두로만 선적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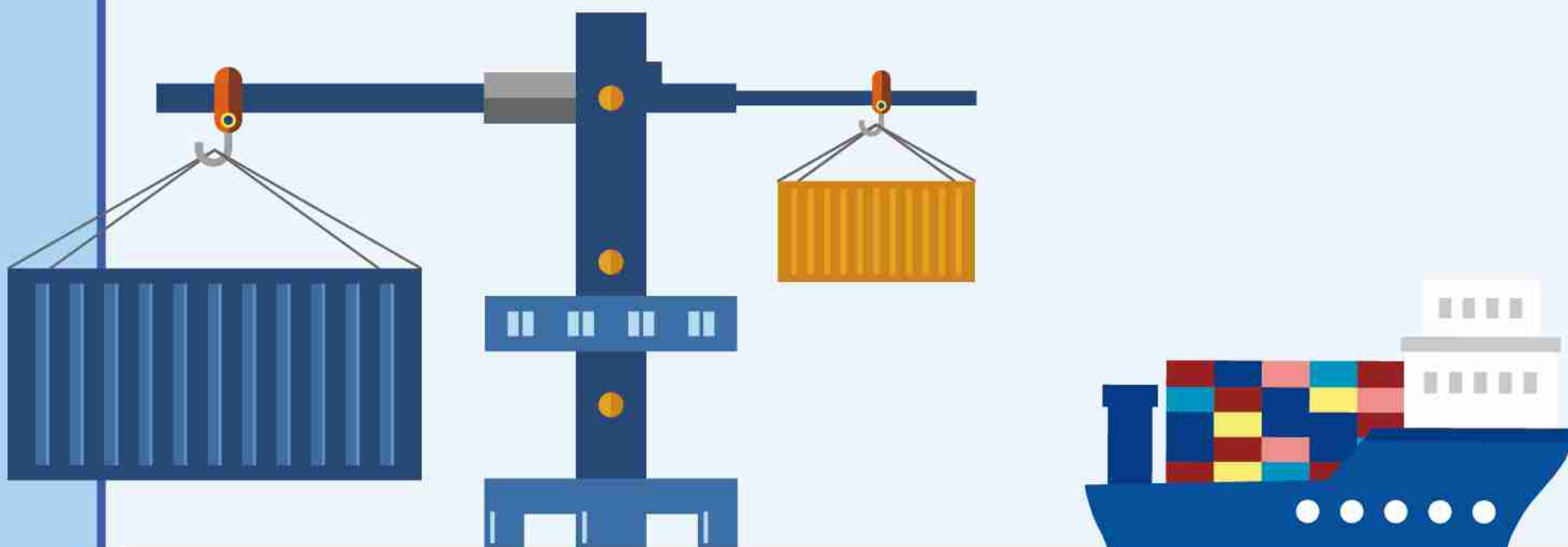
과 정



해양수산부,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건의 : '21. 3.



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
(도, 해수부, 여수해수청 등) 회의 : '21. 4.



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
협업하여 전용부두 이용방안을
만들어주세요!



» **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업**하여, 전용부두
소유기업과 수출기업 간 조립·선적 계약을 체결
하거나 **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의 전용부두
이용방안 마련**

결 과



협업으로 해결한 기업의 수출길,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

- 전용부두 임대를 금지하는 항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,
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애로 적극 해소

